

등록번호	재난안전과-1269
등록일자	2020. 01. 30.
결재일자	2020. 01. 30.
공개구분	부분공개(6)

주무관	민방위담당	재난안전과장	경제건설국장	부시장	삼척시장
협 조					

2020년 민방위 비상대피 및 비상급수 계획

민방위 비상대피시설

전체 인구수 (명)	소요량 (㎡)	확보량계			정부지원		공공용지정	
		개소	확보량 (㎡)	확보율 (%)	개소	확보량 (㎡)	개소	확보량 (㎡)
67,971	56,077	26	61,792	110	-	-	26	61,792

- 대피인구 : 읍·면·동의 주민등록 인구
- 소요면적 : 1인 당 0.825㎡
- 안내표지만, 유도표지판 부착, 비상물품 비치

민방위 비상급수시설

읍동인구 (명)	소요량 (톤)	확보량계			음용수		생활용수	
		개소	확보량 (톤)	확보율 (%)	개소	확보량 (톤)	개소	확보량 (톤)
56,560	1,414	8	1,725	121.99	5	870	3	855

- 급수인구 : 읍·동의 주민등록 인구 (비접경지역으로 면인구 미포함)
- 급수량 : 25ℓ / 1인 1일(음용수 9ℓ, 생활용수 16ℓ)
- 소요량 : 25ℓ x 급수인구
- 음용수의 경우 매 분기별 수질검사

삼 척 시
(재난안전과)

2020년 민방위 비상대피 및 비상급수 계획

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시설장비 운영매뉴얼에 명시된 시설지정 및 관리사항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표준화된 계획 수립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

I 큰 거

- 민방위기본법 제15조(민방위 준비)
-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(민방위 물자·시설 등)
-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(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·장비·물자)
제10조(민방위 준비 명령), 제15조(공공용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)
- 민방위시설장비 운영매뉴얼(비상대피계획 수립)

II 비상대피 계획

1. 계획 수립

- 주관 / 시기: 시장 / 매년 1월
- 고려사항
 - 민방위 공공용 비상대피시설
 - 양적 확보위주 탈피, 비상시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 확보
 - 특정지역 편중 없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안배
 - 권역별 확보 현황, 시설별 수용인원, 주민 대피유도 및 홍보계획, 대피시설 내 국민행동요령 및 안내 계획을 포함
 - 여건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과 연계 수립

- 군부대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
-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소요량 산출
 - 대피인구: 전체인구(읍·면·동)
 - 1인당 소요면적: 0.825㎡
 - 소요면적: 0.825㎡ × 대피인구
 - 확보율: 대피 가능인구(확보면적 ÷ 0.825㎡) ÷ 전체인구 × 100
- 대규모 아파트 대피시설(주차장면적 1만㎡ 이상) 확보면적 현실화
 - 조 건: 면적 1만㎡, 세대수 2,000세대
 - 소요인구: 2,000세대 × 4명(세대 당 4명 산정) = 8,000명
 - 확보면적: 8,000명 × 0.825㎡ × 120% = 7,920㎡
 - ※ 확보면적 7,920㎡로 산정, 대피 가능인구는 9,600명으로 산출

○ 민방위 비상급수시설

- 지역별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
- 수도관 파열, 정수장 파괴 및 오염 등에 대비한 단계별 계획 수립
- 음용수 공급 원칙, 식수와 생활용수 구분 계획 수립
 - ※ 물 관리부서의 전시급수계획에 반영 시 별도 작성 불필요
- 급수인구: 읍·동 이상 인구(비접경지역으로 면인구 미포함)
- 급수량: 25ℓ / 1인 1일(식수 9ℓ, 생활용수 16ℓ)
- 소요량: 25ℓ × 급수인구

□ 지정방법 및 관리

○ 지정권자: 시장

○ 민방위 공공용 비상대피시설

- 시설주 협의 후 지정동의서 교부, 소유주 변경 시 지정동의서 징구

- 지정기준

구 분	기준내용	비 고
벽두께	30cm 이상	500파운드 폭탄 폭발 기준 12m 이격 방호
바닥면적	100㎡ 이상	농·어촌, 면 단위 등 60㎡ 이상
천정높이	2.5m 이상	
출입구	2개소 이상	붕괴 대비
대피거리	5분 이내(거리기준 667m)	신속 대피 감안, 특정지역 집중화 방지
개방성	유사 시 24시간 개방	관리자 상주는 24시간 개방으로 간주 ※ 비상연락망 등의 안내문 비치

-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옥내 방송시설 또는 방송 수신기기 등을 갖춘 시설 또는 방송청취가 가능한 라디오가 보관된 시설
- 지정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세대밀집지역·면 단위지역·시설주미동의 등에 의한 대피시설 부족지역은 예외적으로 대피거리·개방성 등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
- 관리책임자 지정
 - 정(시 담당과장), 부(읍·면·동의 장)
 - 소유자, 관리자 또는 점유자 중 시설위치, 주변여건, 평시활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지정
- 시설점검
 - 정기점검: 분기 1회
 - 일체점검: 도 및 시 계획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전 시설 점검·조사
 - * 공공용 시설은 시설주와 공동점검 및 관리 가능토록 유도
 - ** 국가중요시설 인근 대피시설은 주민(민방위대장, 여성민방위대장) 참여로 점검·정비 강화

- 안내 및 유도 표지판 설치

- 대피시설 출입구 등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
- 안내 및 유도 표지판의 정비
 - * 노후·퇴색 및 식별이 어려운 경우 다국어 병기 표지판으로 교체
 - ** 유도표지판이 대피방향과 실제 대피방향과 일치하도록 제작·부착
-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이 대피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한글표기 아래 등에 외국어(영어, 중국어, 일어, 아랍어 등) 병해 표기
- 지정해제 시 부착되어 있는 안내 및 유도표지판 즉시 제거
-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 및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경우 「민방위기본법 제39조」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

- 시설 홍보

- 시 홈페이지에 대피시설 위치정보 등 게시
- 안내문 제작·배포 등 다양한 홍보대책 마련 지속 추진
- 전광판, 지역방송 매체 등을 통해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의 대피시설 위치정보 확인 방법 안내
- 민방위의 날 훈련 시 「내주변 대피소 찾기」 캠페인 병행 전개

○ 민방위 비상급수시설

-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 시설
 - 수질악화 및 지정가능 시설 부족지역 1일 생산능력 50톤 이상 지정
- 공공기관 및 민간(개인) 수유 급수시설 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 시설
- 시설주와 협의하여 지정동의서 교부(시설주 변경 시 지정동의서 확보)
- 지정 통보 시 평시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등 안내
-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균형에 맞게 안배
- 양수능력 산정기준: 지하수법 등에 따라 허가 및 신고된 생산 가능량

-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: 연 4회(전항목 검사 연 1회, 3/4분기 내 수행)
 - 환경부의 『먹는물 관리법 제5조』 및 『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』 적용
 - 매년 1회 이상: 전 항목검사(3/4분기 이내)
 - 분기 1회 이상: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, 암모니아성질소, 질산성질소, 과망간산칼륨 소비량
 - 방사능물질 : 우라늄(연 1회, 3분기), 라돈(감시항목 반기 1회, 2·4분기)
- 생활용수 수질검사 기준: 1회 / 3년
 - 환경부의 『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』 및 『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』의 검사주기 적용
- 수질(용도) 변경: 음용수 → 생활용수
 -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변경
 - 변경 후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검사 실시
- 시설물 관리
 - 관리 책임자: 정(시 담당과장), 부(읍면동장)
 - 점검주기: 개방 및 부분개방 월 1회 이상, 미 개방 분기 1회 이상
 - 점검내용: 부대시설 작동여부, 시설물 점검, 모터펌프 월 1회 이상 최소 15분간 작동(수질 오염방지) 등
- 동절기 관리
 - 급수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 및 보온재 처리
 - 저수조 이중 보온재(우레탄) 처리로 동파방지
 - 미 개방 시설은 저수조 및 급수배관의 물 빼기로 동파방지
- 시설활용 홍보: 수질검사 결과, 1일 생산량, 시설위치 등 공개
 - 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활용, 분기 1회 수질검사 결과 게시 등

2. 대피시설 지정현황

□ 인구기준 : 2019. 12. 31.(전체인구)

□ 총 괄

전체 인구수 (명)	소요량 (m ²)	확보량계			정부지원		공공용지정	
		개소	확보량 (m ²)	확보율 (%)	개소	확보량 (m ²)	개소	확보량 (m ²)
67,971	56,077	26	61,792	110	-	-	26	61,792

□ 읍면동별 지정현황

구 분	인구수(명)	소요량(m ²)	비상대피시설 현황			
			개소수	확보량(m ²)	수용인원(명)	확보율(%)
계	67,971	56,077	26	61,792	74,899	110
도계읍	10,892	8,986	2	6,834	8,284	76
원덕읍	5,134	4,236	1	370	448	9
근덕면	5,310	4,381	1	755	915	17
하장면	1,357	1,120	-	-	-	-
노곡면	718	592	-	-	-	-
미로면	1,887	1,557	-	-	-	-
가곡면	720	594	-	-	-	-
신기면	676	558	-	-	-	-
남양동	7,840	6,468	8	8,505	10,309	131
성내동	8,387	6,919	2	4,393	5,325	63
교 동	14,943	12,328	7	33,581	40,704	272
정라동	9,364	7,725	5	7,354	8,914	95
외국인	743	613	-	-	-	-

※ 기준에 맞는 건축물 신축 시 비상대피시설 지정 확충

3. 대피시설 구분 및 비상연락망

□ 구 역: 시설별 세부위치도 [붙임1] 참조



□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

구역	해당부서	관리책임자		전화번호	비고
총괄관리	재난안전과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장금희	033-570-3895	
		담당자	심상욱	033-570-3896	
1구역(2개소)	도계읍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이복우	033-570-4710	
		담당	박승연	033-570-4703	
		담당자	이민우	033-570-4704	
2구역(1개소)	원덕읍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박문철	033-570-4760	
		담당	강길석	033-570-4761	
		담당자	이상범	033-570-4763	
3구역(1개소)	근덕면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백금현	033-570-4801	
		담당	이제욱	033-570-4802	
		담당자	김종욱	033-570-4804	
4구역(8개소)	남양동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최형석	033-570-4510	
		담당	우정훈	033-570-4502	
		담당자	김정환	033-570-4507	
5구역(2개소)	성내동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조영승	033-570-4520	
		담당	홍옥희	033-570-4521	
		담당자	박효원	033-570-4523	
6구역(7개소)	교동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박란희	033-570-4540	
		담당	최병원	033-570-4542	
		담당자	김동현	033-570-4544	
7구역(5개소)	정라동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심혜영	033-570-4560	
		담당	김원찬	033-570-4562	
		담당자	박윤숙	033-570-4564	

□ 시설현황 및 운영책임자/대피 유도요원 지정

시 설 현 황					운 영 책 임 자		대 피 유 도 인 원		
구역별 시 설 번 호	시설명	소유자	규모(㎡)	위 치	소 속 (직 위)	성 명 (연락처)	소 속	성 명 (연락처)	
			대피가능 인원(명)						
1 구 역 도 계 대	1-1	내단지 아파트	공공 단체	5,293	장원길 33	관리소장	김상범	도계6리 민방위대장	김문규
				6,416					
	1-2	새롬 아파트	지자체	1,541	도계우회로 2길8	건축과장	박종기	도계3리 민방위대장	이석주
				1,868					
2 구 역 관 내 대	2-1	호산 시크릿 캐슬	민간	370	삼척로 446-23	호산1리 통장	진영도	호산1리 통장	진영도
				448					
3 구 역 관 내 대	3-1	행남 아파트	민간	755	교가2길 19	교가3리 7반 반장	최영헌	교가3리 민방위대장	윤경희
				915					
4 구 역 관 내 대	4-1	삼척 소방서	지자체	106	봉황로 101	소방서장	김동기	14통 민방위대장	황해원
				128					
	4-2	동원파크 3차	민간	1,084	남양안길 26	시설주	정용철	11통 민방위대장	심관섭
				1,314					
	4-3	동화3차 APT	민간	661	남양길 14-17	3통 통장	정연벽	3통 민방위대장	정연벽
				801					
	4-4	세연상가	민간	982	중앙시장1길 22-23	관리소장	박재연	7통 반장	김동실
				1,190					
	4-5	한흥 프라자	민간	989	중앙로 176	관리소장	김광석	3통 반장	홍복희
				1,199					

시 설 현 황					운 영 책 임 자		대 피 유 도 인 원		
구 시 면 구 리 읍 면	시 설 명	시 설 구 분	규 모 (㎡)	위 치	소 속 (직 위)	성 명 (연 락 처)	소 속	성 명 (연 락 처)	
			대 피 가 능 인 원 (명)						
4 구 리 4 구 리 4 구 리	4-6	삼척의료원	지자체	450	오십천로 418	대표	정종훈	5통 반장	김주호
				545					
	4-7	삼원상가	민간	1,997	중앙로 185	관리소장	최돈기	5통 민방위대장	박순덕
				2,421					
	4-8	삼척 중앙시장	민간	2,236	진주로 12-21	조합장	박재탁	6통 민방위대장	김용학
				2,710					
5 구 리 5 구 리	5-1	대학로 지하주차장	지자체	1,999	대학로 31	교통행정 과장	안도영	7통 민방위대장	이용우
				2,423					
	5-2	원당동 현대아파트	민간	2,394	오십천로 301-30	관리소장	이화영	18통 민방위대장	김미경
				2,902					
6 구 리 6 구 리 6 구 리	6-1	동부아파트	민간	2,463	동해대로 4273	관리소장	심의석	13통 민방위대장	박연화
				2,985					
	6-2	코아루 아파트	민간	3,195	교동로 133	관리소장	진형학	20통 민방위대장	이재원
				3,873					
	6-3	신동아 아파트	민간	2,674	정상로 90	관리소장	한응호	16통 민방위대장	김길순
				3,241					

시 설 현 황					운 영 책 임 자		대 피 유 도 인 원		
구 시 면	구 역	시 설 명	시 설 구 분	규 모 (㎡)	위 치	소 속 (직 위)	성 명 (연 락 처)	소 속	성 명 (연 락 처)
				대 피 가 능 인 원 (명)					
6 구 시 면	6-4	코아루타워 아파트	민간	2,076	교동로 97	관리소장	장성균	23통 민방위대장	황갑상
				2,516					
	6-5	e편한세상 아파트	민간	7,648	하실길 72	관리소장	안복모	27통/28통 민방위대장	홍근표 안준일
				9,270					
	6-6	세영리첼 아파트	민간	6,181	마달길 215	관리소장	정춘경	24통 민방위대장	최순옥
				7,492					
	6-7	지웰 아파트	민간	9,344	동해대로 4183	관리소장	이동훈	25통/26통 민방위대장	이승협 박정은
				11,326					
7 구 시 면	7-1	동양아파트	민간	437	오십천로 529	관리소장	정기정	19통 민방위대장	김주한
				530					
	7-2	유성 아파트	민간	3,306	동해대로 4044-13	관리소장	이용준	26통 민방위대장	이기숙
				4,007					
	7-3	현진에버빌 아파트 (확보면적 최적시설)	민간	2,184	정상로 35	관리소장	지광열	31통 민방위대장	윤영숙
				2,647					
	7-4	파라다이스 호텔	민간	519	새천년도로 131	관리소장	황영구	13통 민방위대장	이명조
				629					
	7-5	동화4차 아파트	민간	908	동해대로 3943	1통 7반 반장	황달원	1통 민방위대장	박종술
				1,101					

4. 비상급수시설 지정현황

□ 인구기준: 2019. 12. 31.(읍·동인구)

□ 총 괄

읍동인구 (명)	소요량 (톤)	확보량계			음용수		생활용수	
		개소	확보량 (톤)	확보율 (%)	개소	확보량 (톤)	개소	확보량 (톤)
56,560	1,414	8	1,725	121.99	5	870	3	855

□ 읍·동별 지정현황

구 분	인구수 (명)	소요량 (톤)	음용수		생활용수	
			개소	확보량(톤)	개소	확보량(톤)
계	56,560	1,414	5	870	3	855
도계읍	10,892	272	1	100	-	-
원덕읍	5,134	128	1	200	1	200
남양동	7,840	196	-	-	-	-
성내동	8,387	210	-	-	1	150
교 동	14,943	374	2	350	1	505
정라동	9,364	234	1	220	-	-

※ 비접경지역으로 면인구 미포함

5. 비상급수시설 배치도 및 비상연락망

□ 구 분 : 시설별 세부위치도 [붙임4] 참조



□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

구역	해당부서	관리책임자		전화번호	비고
총괄관리	재난안전과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장금희	033-570-3895	
		담당자	심상욱	033-570-3896	
1구역(1개소)	도계읍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이복우	033-570-4701	
		담당	박승연	033-570-4703	
		담당자	이민우	033-570-4704	
2구역(2개소)	원덕읍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박문철	033-570-4760	
		담당	강길석	033-570-4761	
		담당자	이상범	033-570-4763	
3구역(1개소)	성내동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조영승	033-570-4530	
		담당	홍옥희	033-570-4521	
		담당자	박효원	033-570-4523	
4구역(3개소)	교동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박란희	033-570-4540	
		담당	최병원	033-570-4542	
		담당자	김동현	033-570-4544	
5구역(1개소)	정라동 행정복지센터	정	안덕봉	033-570-3880	
		부	심혜영	033-570-4560	
		담당	김원찬	033-570-4562	
		담당자	박윤숙	033-570-4564	

□ 전원차단 시 대책 방안

○ 상시전원 차단

- 비상급수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안정적인 비상용수(음용수, 생활용수) 공급

○ 비상발전기 고장

- 수방자재 및 재난관리자원을 활용하여 비상급수시설 가동

6. 조치사항 및 임무 · 역할

□ 상황별 조치사항

상 황	조 치 사 항
민방공 경보발령	대피시설 개방, 대피유도요원 배치
	↓
주민 대피	주민 대피유도, 시설 출입통제
	↓
민방공 상황	방송청취(스피커, 라디오 ON)
	↓
경계 경보	대피시설 개방, 경계활동
	↓
상황 종료	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

□ 시설운영 책임자의 역할 및 임무

- 민방위 준비명령 발급 시 비상대피시설 운영 준비
(대피공간 확보, 방송시설 · 비상물자 준비 등)
- 화생방상황 또는 경보해제 등 확인을 위한 준비 및 조치
- 민방공 경보발령 시 시설 개방
- 민방공 공습 간 시설 출입통제
- 상황종료 후 시설 피해보고(시 상황실)

7. 주민 홍보

□ 추진내용

-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홈페이지 게시
- 민방위의 날 훈련 전 반상회보를 통합 주민 홍보
-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통로별 게시판 활용
- 민방위대원 및 공무원 대상 비상대피계획 홍보
- 통리장 및 각 민방위대장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홍보
- 공공용 지정시설 건물주 및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대피계획 배부 및 입주민 홍보
- 관내 소방서,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계획 배부
- 대피소 식별 가능토록 안내 및 유도표지판 적정 위치 부착

□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

○ 경계경보 발령 시

- 즉시 TV,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-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.
-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.
-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,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,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.
-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점검하고,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.
- 극장, 운동장,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.

○ 공습경보 발령 시

-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,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합니다.
-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와 간단한 생활 필수품, 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.
-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대피 하도록 합니다.
- 대피한 뒤에도 계속방송을 들으면서 정부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.

○ 화생방경보 발령 시

- 방독면, 보호의를 착용하거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.
-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음식물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로 잘 포장해두고, 우물, 장독은 비닐이나 뚜껑으로 잘 덮어 두어야 합니다.
- 화학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신속히 대피하되, 실내 대피 시에는 문을 꼭 닫고 외부 오염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
-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합니다.
- 핵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,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, 핵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.
-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화학/생물학/방사능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.
-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격 이후에도 그 일대가 오랫동안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. 따라서 정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보호장비 착용 및 보호조치를 계속 유지합니다.

- 붙임 1.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위치도**
2.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세부점검표
3. 국민행동요령 홍보물
4. 비상급수시설 위치도
5. 비상급수시설 세부점검표

붙임 1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위치도

제 1 구역 도계읍



1-1 도계내단지아파트, 1-2 도계새롬아파트

제 2 구역 연평면



2-1 호산시크릿캐슬

제 3 구역 기표면



3-1 행남아파트

제 4 구역 기표면



4-1 삼척소방서, 4-2 남양동 동원파크3차, 4-3 남양동 동화3차아파트,
4-4 세연상가, 4-8 삼척중앙시장

제 4 구역 판양동



4-5 한흥프라자, 4-6 삼척의료원, 4-7 삼원상가

제 5 구역 성내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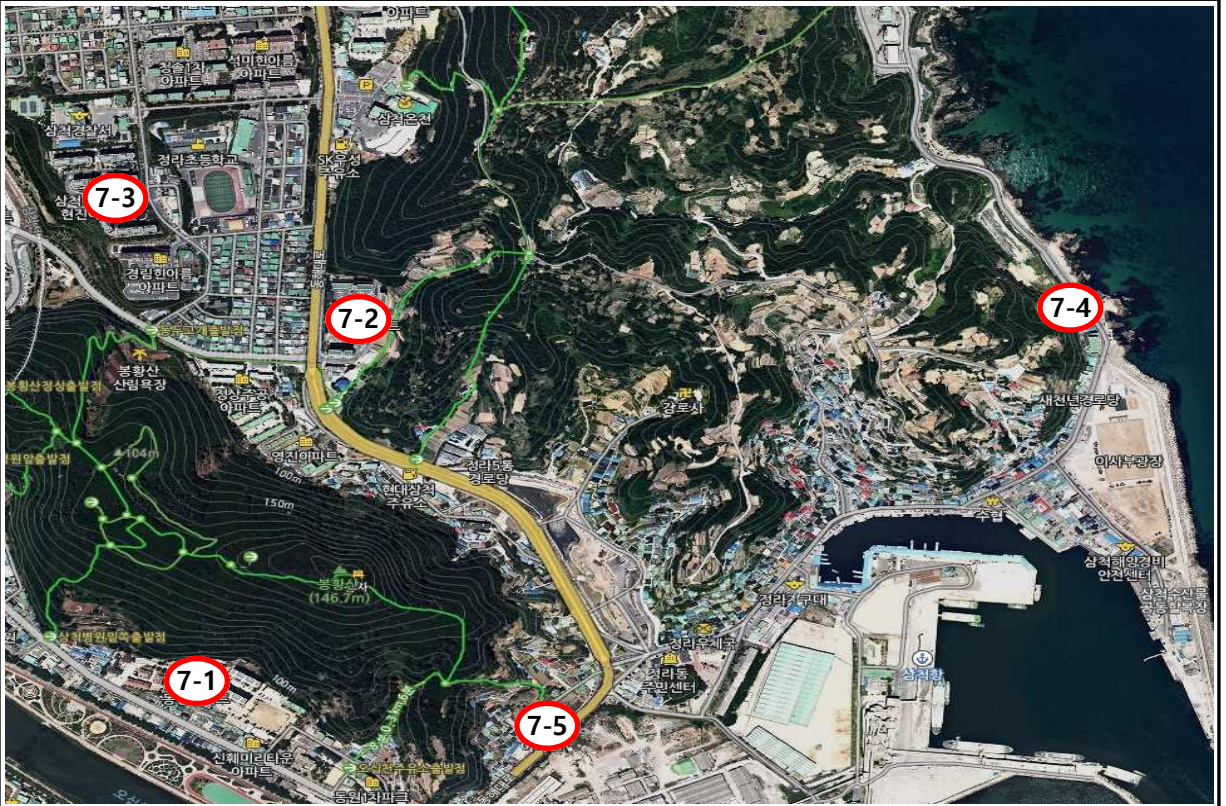
5-1 대학로 지하주차장, 5-2 원당동 현대아파트

제 6 구 역 표 명



6-1 교동 동부아파트, 6-2 교동 코아루아파트, 6-3 교동 신동아아파트
 6-4 코아루타워아파트, 6-5 e편한세상아파트, 6-6 세영리첼아파트, 6-7 지웰아파트

제 7 구 역 정 라 명



7-1 정상동 동양아파트, 7-2 유성아파트, 7-3 현진에비빌아파트,
 7-4 파라다이스 모델, 7-5 동화4차아파트

붙임 2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세부점검표

□ 주민대피시설(시설별)

- 점검일시:
- 시설명:
- 소재지:

점 검 내 용	점 검 결 과
○ 매년 1월 대피계획 수립여부	- 수립() 미수립()
○ 시설별 운영책임자 지정	- 지정() 미지정()
○ 행정구역도상 시설위치 및 현황도	- 작성() 미작성()
○ 시설 정기점검 여부(분기1회) 여부	- 실시() 미실시()
○ 새올시스템 입력 여부	- 입력() 미입력() • 누락 시설수()
○ 홈페이지 상시게시 여부	- 게시() 미게시()
○ 출입구 도색 등 시설주변 청소상태	- 양호() 불량()
○ 내부의 습기 제거 등 청소상태	- 양호() 불량()
○ 안내·유도표지판의 부착 및 훼손여부	- 양호() 불량()
○ 시설 내 라디오 청취가능여부	- 가능() 불가()
○ 휴대폰 통화 가능 여부	- 가능() 불가()
○ 전기시설 설치 여부	- 설치() 미설치()
○ 장마철 누수 여부	- 누수() 양호()
○ 기타 특이사항	

※ 점검주기: 분기 1회

전시 국민행동요령

생명지키는 우리 주변 **대피소** 가보기

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

공습경보가 발령되면...

-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-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- 길 가에서 보행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- 차량을 운행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(지하시설)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
-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,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경계경보가 발령되면...

-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대피소에서 나와 방송을 계속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보해제가 발령되면...

- 국민 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.



가정내 평시 비상대비 물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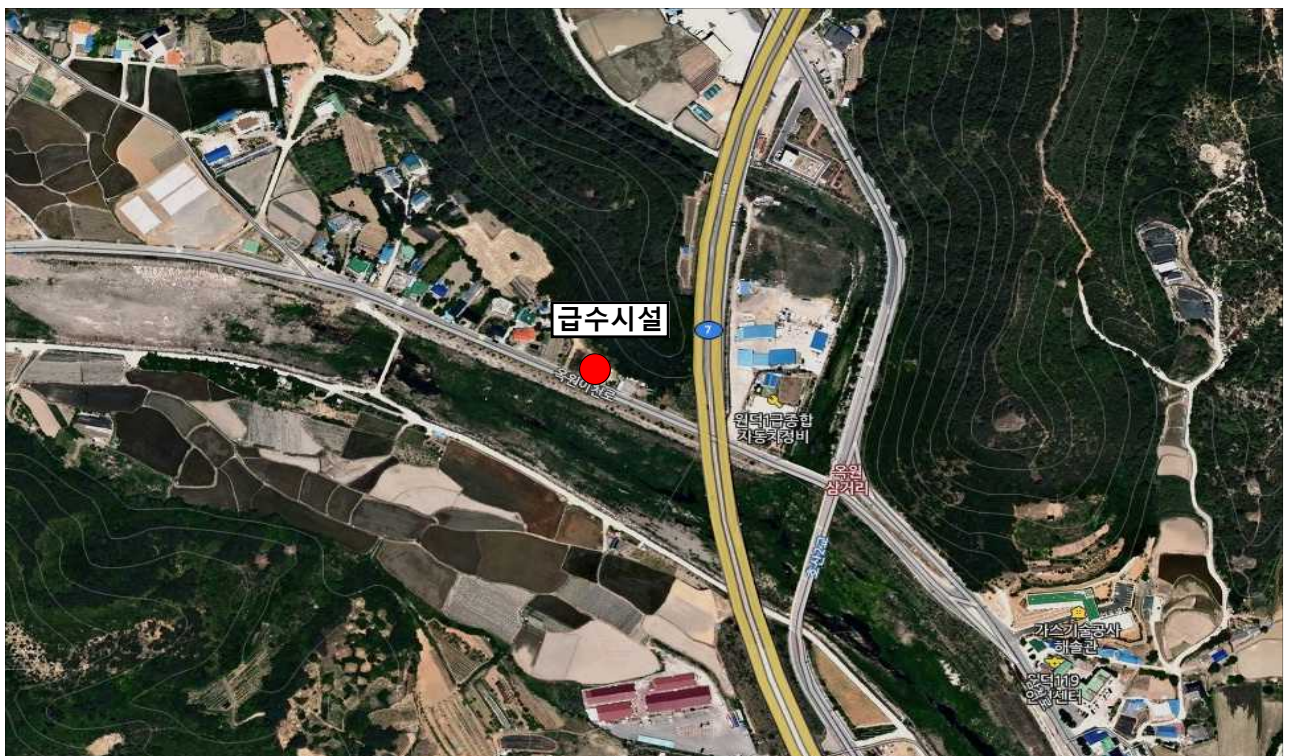
★일반적인 비상대비 물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

<p>비상용 생활필수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식량 : 가급적 조리과 보관이 간편한 쌀, 라면, 밀가루 등 (15일~1개월분) ● 취사도구 : 식기(코펠), 버너 및 부탄가스(15개 이상) ● 침구 및 의류 : 담요, 내의 등 ● 라디오(배터리 포함), 배낭, 휴대용 전등, 양초, 성냥 등 	
<p>가정용 비상약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의약품 : 소독제, 해열진통제, 소화제, 지사제, 화상연고, 지혈제, 소염제 등 ● 의약외품 : 핀셋, 가위, 붕대, 탈지면, 반창고, 삼각건 등 	
<p>외생방편 대비물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방독면 또는 수건, 마스크 ●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 ● 해독제,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, 합성세제 ● 충분한 접착테이프 (창틀, 문틀 밀폐용) 	

붙임 4 비상급수시설 위치도



[도계읍 비상급수시설(음용수)]



[원덕읍(옥원) 비상급수시설(음용수)]



[성내동(도경) 비상급수시설(생활용수)]



[교동(이사부) 비상급수시설(생활용수)]

붙임 5 비상급수시설 세부점검표

□ 비상급수시설(시설별)

- 점검일시:
- 시설명:
- 양수시간: 00시 00분 ~ 00시 00분까지

담당자	담당	과장

점검내용	점검결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수장 건물 내외 도색, 창문훼손 여부 등 ○ 시설주변 청소상태 ○ 안내표지판 부착 및 정리상태 ○ 자가발전기, 각종모터, 배전판, 변압기 등 작동여부 및 위험요소 제거여부 ○ 유류저장, 밧데리충전, 호스, 휴즈, 기타 공구 등 확보 비치상태 ○ 배관의 파열, 조임 등 상태 ○ Casing 뚜껑의 훼손여부 ○ 저수조 저장물의 관리상태 ○ 저수조 뚜껑, 양수장 뚜껑의 관리상태 ○ 기타 시설의 특이사항 	

※ 점검주기: 월 1회